

연구윤리위원회 심의 규정

제정 2020년 3월 18일

1.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위반사례 여부와 그 결과 처리에 대한 상세 심의를 하기 위하여 운영된다.
2.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이 겸임하고,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제기된 윤리문제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.
3.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4.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소가 있는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.
5.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연구윤리 위반 내용을 심의하며,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6. 연구윤리위원회는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소된 사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.
7. 연구윤리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 혹은 연구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
8.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.
9.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은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,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.
10. 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